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1999.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 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 다. 경쟁 제한적 행정규제 폐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케 함으로서 대행업자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킴. (안 제7조)
- 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지정케 함으로서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유사검정의 금지)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을 폐지함.(안 제8조)
- 라.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로 정비하여 공사비 산출방법 및 공사비를 절감함.(안 제10조, 안 제36조)
- 마. 32mm구경의 계량기 신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기준과 급수장치 손료를 추가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안 제12조, 별표4)
- 바.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요율을 적용하고자 함.(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관계부처 사전승인등 : 맑은물 58440-874('99.5.11)호의 조례정비계획
- 라.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붙임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군수가 지정하는”을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허가”를 “지정”으로 하고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동조 제3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등”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호”를,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각각 “별표1”로 한다.

제36조제1호중 “40mm”를 “32mm”로, 동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계량기구경별란중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추가하고, 동표 분담금액란중 200,000원과 400,000원 사이에 300,000원을 추가한다.

【별표3】 영업용의 구분내용란중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7. 법령(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동표 옥탕용 2종의 구분내용란중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로

한다.

【별표4】 구경별란중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추가하고, 동표 손료금액란중 1,030원과 1,430원 사이에 1,230원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사유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 ----- <u>군수</u> 는 <u>민원인이 선정하는</u> -----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율경쟁 체제 전환 -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 - 신속한 급수공사 추진 - 공사비 절감 효과</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생략) 3. (생략)</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 ----- -- <u>지정</u> -----</p> <p>1. “삭제”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 수도법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p> <p>○ 국가기술자격법제5조(유사검정의 금지)에 위배</p>

현행	개정	사유
<p>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6,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6,000원 갱신1건당 6,000원</p> <p>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p> <p>1. “삭제” 2. “삭제” 3. “삭제”</p> <p>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 정비 - 공사비 절감</p>

현행	개정	사유
<p>제12조(시설분담금)</p> <p>① 전용급수장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12조(시설분담금)</p> <p>① ----- ----- [별표1] -----</p> <p>② ----- ----- [별표1]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제수수료)</p> <p>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p> <p>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3,000원</p> <p>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제36조(제수수료)</p> <p>----- -----</p> <p>1. ----- ----- ----- 32mm ----- -----</p> <p>2. “삭제”</p> <p>3. “삭제”</p> <p>4. “삭제”</p> <p>5. “삭제”</p>	<p>○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수도법제13조제2항 및 시행령18조의2(수도용자재의 기준)에 따라 시공</p> <p>○ 준공검사수수료 : 현지 확인후 준공통보</p> <p>○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시험에 필요한 비용신청인 부담</p> <p>○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 처분이행시 즉시 해제</p>

현행	개정	사유
<p>【별표1】 시설분담금</p>	<p>【별표1】 계량기구경별란중 25mm와 40mm사이에 32mm 추가, 분담금액란중 200,000원과 400,000원 사이에 300,000원 추가</p>	<p>구경 신설에 따른 정비</p>
<p>【별표3】 업종구분표 영업용란 1~16 (생략) 17. (신설)</p> <p>동표 욕탕용 2종란 ○ 특수목욕장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p>	<p>【별표3】 업종구분표 영업용란 1~16 (현행과 같음) 17. 법령(의료법,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신설</p> <p>동표 욕탕용 2종란 ○ -----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803m²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m²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p>	
<p>【별표4】 급수장치손료</p>	<p>【별표4】 구경별란중 25mm와 40mm사이에 32mm 추가, 손료금액란중 1,030원과 1,430원 사이에 1,230원 추가</p>	<p>구경 신설에 따른 정비</p>

수 도 법

제2조(책무)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수돗물”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 - 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 - 2521 / 전송 333 - (355)
 도시경제과(본청3층) 과장 석명준 지방토목주사 정근성, 담당자 전재준

문서번호 도경 58442 - 488
 시행일자 1999. 7. 8. ()년
 (경유)
 받음 받는곳참조
 참조 건설,산업개발담당

취급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석 명 준 /
과 장	진 길		
기안	진 개 주	담당	[인]

제목 수도급수조례 및 급수공사대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수도법에 의거 군수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및 급수공사대행규칙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수도급수조례와 급수공사 대행규칙을 개정코자 하니 읍면 담당자께서는 주의깊게 검토하시어 검토 의견을 '99. 7. 8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일내 도착하지 않으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임안을 개정안으로 확정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붙임 : 1)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평창군급수공사대행규칙중개정규칙안1부. 끝.

평 창 군 수

방자 : 5(1~8). 3제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시설분담금)</p> <p>① 전용급수장치,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 [별표1]</p> <p>제 27조(업종의구분)</p> <p>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수 있다.</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같음)</p> <p>③ (현행과같음)</p> <p>제12조(시설분담금)</p> <p>① 전용급수장치,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경우에도 [별표1]의 시설분담금은……한다.</p> <p>③ (현행과같음)</p> <p>④ (현행과같음)</p> <p>※ [별표1] 중 계량기구경별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삽입하며 그 분담 금액은 300,000원 으로 한다.</p> <p>제 27조(업종의구분)</p> <p>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수 있다.</p> <p>※ [별표3] 영업용란에 “17. 법령(의료법,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추가. 욕탕2종란에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삭제하고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830㎡이하,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 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를 삽입.</p>

현행	개정
<p>제36조(제수수료) 균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36조(제수수료) 균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p>	<p>1.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u>급수관 구경 32m/m이상 6,000원</u>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p>
<p>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제접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2. “삭제”</p>
<p>3.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3. “삭제”</p>
<p>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3,000원</p>	<p>4. “삭제”</p>
<p>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p>	<p>5. “삭제”</p>